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강요·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27. 2017고합77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 피고인 1외 2인

【검 사】특별검사 박영수(기소), 특별검사보 이용복, 파견검사 양석조(공판)

【변호인】 법무법인 바른외 4인

【주문】

1

[피고인 1]

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문화체육관광부 1급공무원들에 대한 사직강요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, 강요의 점은 각 무죄.

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.

[피고인 2]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[피고인 3]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【이유】

]

[이유]

1

[이유]

]